

예 산 총 칙

제 1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74,015,511	8,220,465
일반회계		252,304,405	7,569,132
특별회계		21,711,106	651,333
	기타특별회계	21,711,106	651,333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87,053	23,612
	주택사업특별회계	427,371	12,821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930,074	27,90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101,997	63,060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35,986	19,080
	주차장특별회계	305,797	9,174
	수질개선특별회계	14,300,623	429,01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320,474	39,614
	기반시설특별회계	901,731	27,052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463,973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4,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